안양시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안양시 조례 제정 및 개·폐 청구 사무처리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안양시장 권한대행
부 시 장 송 재 환

2022년 4월 20일

안양시 훈령 제734호

안양시 조례 제정 및 개·폐 청구 사무처리 규정 폐지규정

안양시 조례 제정 및 개·폐 청구 사무처리 규정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